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6. 6. 23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6월 19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6월 22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6년 6월 22일

제12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홍성배)

가. 개정이유

○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「특별공적」이 인정되는 자를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(안 제2조)

○ 포상금 지급기준 개선 (안 제3조)

현 행 { 1년차 체납액 : 징수액의 1/100
2년차 이상 체납액 : 징수액의 5/100

개정안 { 1년차 체납액 : 징수액의 1/100
2년차 체납액 : 징수액의 3/100
3년차 이상 체납액 : 징수액의 5/100

다. 참고사항

○ 예산조치 : 비예산

○ 입법예고(2006.05.18~2006.06.7)결과 : 의견없음

○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. 專 門 委 員 의 檢 討 報 告 要 旨 (專門委員 김찬재)

○ 본 조례안은 2006.3.28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포상금 지급시마다 제기되었던 형평성과 신뢰성을 재고할 수 있는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.

4. 審 査 結 果 : 原 案 可 決